



보도시점 2026. 5. 13.(수) 11:00  
5. 14.(목) 조간

배포 2026. 5. 13.(수) 09:00

# 농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 농식품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5.18~7.31)’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5.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등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농지법」제23조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다.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이 생기고,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5년 이상)의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1ha를 초과하는 상속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 양수인, 매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하여 농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 등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 구두로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의 경우 친인척 또는 농촌 주민과 임대차를 했음에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 개인간 임대차 계약 방법 >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 농지, 상속·이농 농지(1ha 이하),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서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등에 하면 된다.

### < 농지은행 임대위탁 방법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상속농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 임대 위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농지은행(www.fbo.or.kr)에서 전자계약으로 임대위탁을 하거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계약 체결 시에는 농지 위탁자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종합 증명서를, 농지 임차인은 농업인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관련 문의는 농지은행(1577-7770)에 하면 된다.

\* 신청 당시 비농업인일 경우 계약 후 제출

농지은행을 활용할 경우 방문 없이도 PC 또는 휴대전화로 임대위탁 계약 체결 및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1ha 이상은 의무적으로 농지은행에 위탁하여야 하며, 8년 이상 농지은행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가 발생하지 않는다.

### <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

한편, 농식품부는 특별 정비기간과 그 이후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 내 온라인 신고센터(5월 18일 오픈)와 오프라인 신고센터(1811-8852, 6월 1일 오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8월부터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기환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임대차 허용범위(농지법 제23조)
- 2. 특별 정비기간 관련 홍보 이미지
- 3. 개인간 임대차 계약 절차
- 4. 농어촌공사 위탁 시 방문계약 절차
- 5. 농어촌공사 위탁 시 전자계약 절차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농지과	책임자	과 장	김기환 (044-201-1731)
		담당자	사무관	이명현 (044-201-1739)

## 붙임 1

## 임대차 허용범위(농지법 제23조)

1. 농지법 시행('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부칙 제4조)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3. 상속받은 농지 및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미만의 농지(1만㎡ 초과되는 면적을 개인 간 임대할 경우 초과면적은 처분대상임)
4. 농·수·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취득한 담보농지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은 농지
6.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지안의 농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의 농지 등
  -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09.11.28. 부터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8.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 \*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면서 읍·면지역의 집단화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5.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6.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일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17.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함)
18. 주말·체험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9.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게 하는 경우
20.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농지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21.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2.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붙임 2

## 특별 정비기간 관련 홍보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 지금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세요

**기간** 2026년 5월 18일 ~ 7월 31일 **문의**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 : 각시·구·읍·면 임대수탁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



# 농지 전수조사 임차농보호 신고센터

**문의** [njy.mafra.go.kr](http://njy.mafra.go.kr) [5월 18일~] / 1811-8852 [5월 27일~]



## 붙임 3

## 개인간 임대차 계약 절차

### 1-1. 개인간 임대차 계약 절차



#### STEP 1

개인간 임대차 계약(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활용)



#### STEP 2

농지대장 등재(시·구·읍·면)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 방문(대면)계약 시 절차



STEP 1

필요서류 준비

공통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농지 위탁자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인 위탁자에 대한 임대(사용대)수탁 수수료면제 신청 시,  
농업인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농지 임차자

농업인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신청당시 비농업인일 경우 계약 후 제출

\*\* 사용대차 계약일 경우 제출

<공공마이데이터로 간편 제출 가능 서류(8종)>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STEP 2

계약

2-2. 전자계약 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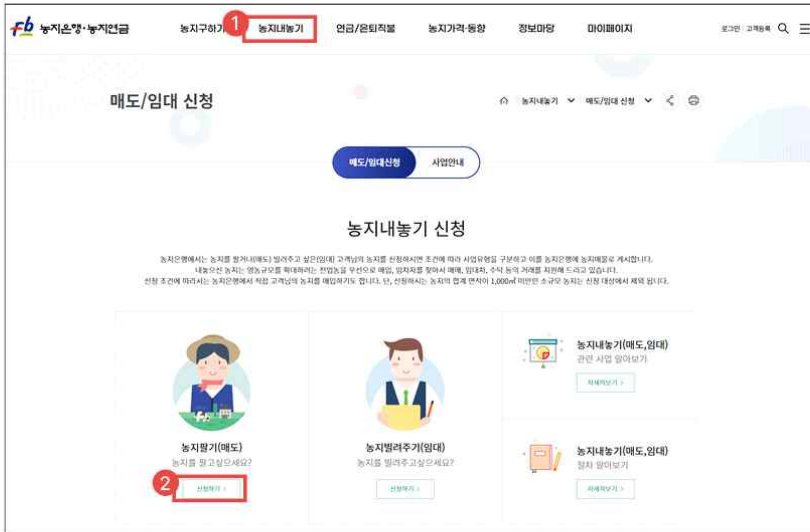


STEP 1

농지은행 포털 회원가입(www.fbo.or.kr) 후 신청 정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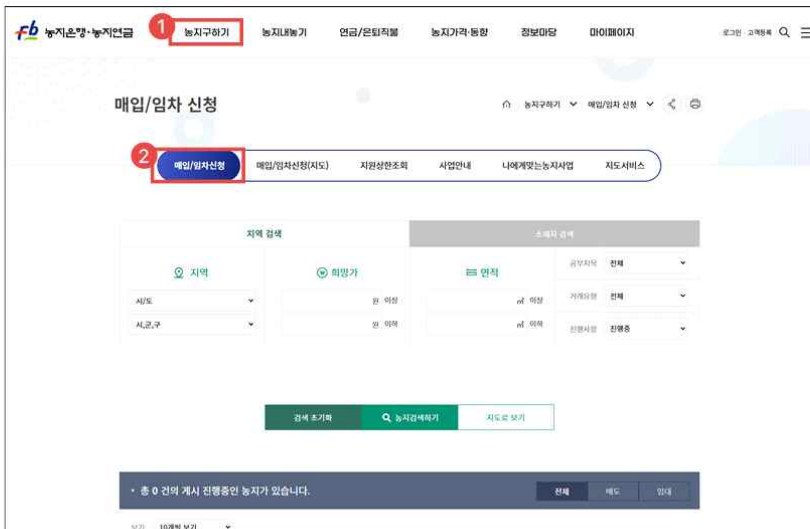
농지 위탁자

농지내농기 ▶ 임대 신청



농지 임차자

농지구하기 ▶ 임차 신청



## STEP 2

### 공공마이데이터로 서류 제출

농지위탁자의 경우 관할지사에 추가서류 우편발송  
- 토지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통장사본

#### ※공공마이데이터란?

국민의 정보 전송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국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이용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전송하는 서비스

\*국민 편의 증진 및 서류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STEP 3

### 임대수탁 전자계약

#### 1) 공사

제출한 서류를 공사 관할지사에서 검토  
- 농지위탁 신청자 및 위탁 농지 적격여부 등

#### 2) 공사 ▶ 신청자

계약서 전송  
-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서명 요청

#### 3) 신청자

